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 효율화를 위한 납본제도 개선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gal Deposit System for National S&T Information Policy

윤종민*

Chong-Min Yoon

차례

- | | |
|-------------------------|-----------------------|
| 1. 서 론 | 4.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개선 방안 |
| 2. 납본제도의 일반적 의미와 필요성 | 5. 결 론 |
| 3.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 참고문헌 |

초 록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에 관하여 현행 법령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과학기술, 정보정책, 납본제도, 저작권, 정보유통, 제도개선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Principal Researcher, Policy Research Dept., KISTI, yoon1215@kisti.re.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6월 1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6월 14일

ABSTRACT

In order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national S&T information system that consists of essential element in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necessary to make institutional devices for systematically and comprehensively collecting, managing and distributing S&T information resources at the national level. This paper aims to seek for alternatives to improve the legal deposit system, one of the institutional devices,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KEYWORDS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formation Policy, Legal Deposit System, Copyright, Information Distribution, Regulation Developmen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유통체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혁신 시스템¹⁾의 개념이 도입되고 지식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경제²⁾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창출·확산 및 이용을 위한 시스템의 정비는 국

가기술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일찍부터 관련법령의 정비와 전문기관의 설치·육성을 통해 국가전략에 필요한 핵심 과학기술 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보존하기 위한 정보유통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첨단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국내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관리 및 유통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과학기술정보가 일반정보와

- 1) "국가혁신 시스템"은 한 나라의 기술혁신능력과 국제경쟁력을 그 나라가 지니고 있는 기술혁신 관련 제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 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국가혁신체제론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그에 따르면 어느 한 국가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지식의 창출·확산·사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패턴화·제도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술혁신 관련 제도들이 합쳐져 구성된 체제를 "국가혁신 시스템" 또는 "국가혁신체제"라고 한다(OECD 1997).
- 2) "지식기반경제"란 지식과 정보의 창출(production), 확산(distribution), 이용(use)에 직접적으로 기반한 경제 즉,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으로 부상하고, 지식기반의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증가하는 등 지식과 정보의 비중과 역할이 높아지는 경제체제를 말한다(OECD 1996).

달리 공공재적 전략자원일 뿐만 아니라,³⁾ 국가 차원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망라적인 수집과 보존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 등의 지원을 받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발생되는 정보는 그 성격상 모든 국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 집중관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고, 국가의 중요 지식자산으로서 영구보존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 납본제도이다. 납본제도란 국내 출판사 등이 도서나 정기간행물 등 정보자료를 생산하거나 발간하는 경우 공공적 보존 및 이용을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따라서 납본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의 효율적인 구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가정보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납본제도를 효과적으로 정비·활용하는 것은 국가 정보유통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현행 과학기술정보자료의 납본제도 특히,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납본제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연구개발법령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 기능을 발

휘하기 어려우며, 이외에도 도서관 및 독서진 흥법 등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일반적인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 및 운영실태 측면에서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2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의 효율화 측면에서 현행 납본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일반적인 납본제도의 발전적인 정비방안은 별도로 하고, 특히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의 중심기관인 국가정보기관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납본제도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납본제도의 일반적 의미와 유형 및 과학기술 정보활동에의 유용성을 검토하고, 납본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에 대한 연혁적 고찰과 중요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국가적 수집·보존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다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 관련 납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그 개선방안을 검토·제시한다.

3) "과학기술정보"와 "일반정보"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과학기술정보는 그 첨단성·전략성·파급성 등의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측면에서 보다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국가기술정책 대상으로서의 과학기술정보에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보고서, 학술논문, 기술·산업동향자료, 특히, 규격,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고 있다(한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참조).

2. 납본제도의 일반적 의미와 필요성

2.1 납본제도의 의미와 연혁

납본제도(legal deposit system)라 함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 정의되고 있으나,⁴⁾ 일반적으로 도서 등의 자료를 생산하거나 출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정해진 기간 내에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⁵⁾

납본제도는 1537년 프랑스의 프랑소와 1세가 도서의 검열과 도서출판에 대한 특권부여를 위해 몽펠리에(Montpellier) 칙령을 공포하여 프랑스에 있는 모든 출판사는 새로 출판된 모든 도서를 왕립도서관(Royal Library)에 무료로 한 부씩 납본하도록 한 것이 효시이며,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130여 개국에서 1개 이상의 납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이두영 1986).

우리나라의 경우 1907년 제정된 최초의 언론관계법인 광무신문지법(光武新聞紙法)에서 신문검열을 목적으로 한 납본제도가 처음 규정되었으며, 이후 미군정법령 제88호(1946.5.29)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정기간행물에 대한 납본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다.

이후 국회도서관법(1988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년), 협동연구개발촉진법(1994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2001년) 등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른 납본제도가 도입·운영되고 있다.

납본제도는 당초 언론과 출판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검열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저작권 보호, 교환용 자료입수, 출판통계정보의 생성, 도서관 자료수집, 정부출판물 배포는 물론,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촉진 등 다양한 목적으로 납본제도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2 국가 납본제도의 유형과 법체계

납본제도의 유형 및 법체계는 나라마다,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납본제도의 유형은 그 목적에 따라 대략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가장 고전적인 의미에서 언론 또는 출판에 대한 단속·검열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둘째, 저작권의 확보와 보전 수단으로서의 유형, 셋째, 귀중한 국가의 문화 유산 혹은 중요 정보자원으로서 국가적 보존과 이용을 위한 유형이다(신인용 2002).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유형분류는 납본제도의 역사적 발

4)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나라에서 발간된 문헌(도서, 팸플릿, 축차간행물, 악보, 지도류 등)을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이두영 1986); “저작권 보호나 국가문화의 수장을 위해서 한 국가에서 새로 간행한 출판물 또는 기타의 도서관 자료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의 소정기관에 제출하는 제도”(이진상 1994); “자료를 출판·생산·수입·배포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일정부수를 국립도서관이나 지정기관에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적 장치”(윤희윤 2002) 등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

5) “납본”이라는 용어는 “신간도서를 발행하였을 때 또는 판권을 얻으려 할 때 법에 의하여 규정된 관청이나 도서관에 납입하는 도서”라고 정의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1996).

전과정에서 살펴본 구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납본제도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상호 결합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납본제도를 규정한 법체계의 형식에 있어서도 각 나라의 법 현실과 역사적·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는 국가도서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법, 저작권에 관한 일반법에서 규정하는 방법, 별도의 납본법을 제정하는 방법, 관련 법령이나 행정명령(포고) 등을 통해 목적에 따라 규정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납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단일법령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복수의 법령에서 하나 이상의 납본제도를 규정하여 운영되기도 한다(윤희윤 2003). 국가도서관과 관련된 납본제도를 중심으로 할 경우 각국의 법률 형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우리나라의 납본관련 법체계는 국회도서관법 등 도서관 관계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간행물 관계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과학기술 관계법 등에서 복수의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저작권의 확보와 보전, 문화유산 및 정보자원으로서의 국가적 집중보존과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2.3 납본제도를 둘러싼 법적 쟁점

납본제도를 규정하는 주요 요소는 납본목적, 납본대상과 범위, 납본주체와 납본처, 납본 절차와 방법, 납본부수, 납본기한, 납본에 따른 비용보상과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납본의무의 부과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위헌성 문제, 규제완화 측면에서의 납본제도의 적절성 문제, 납본제도와 저작권 간의 상충문제 즉, 납본자료의 전자화 및 유통에 따른 저작권 침해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3.1 납본제도의 위헌성 문제

납본제도의 운영, 다시 말하면, 법률에 의한 납본의무부과 및 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의

〈표 1〉 국가도서관 납본제도 관련 법률 형식

구 분	해 당 국 가	비 고
납 본 법	프랑스, 스웨덴, 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캐나다, 라트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벨기에, 이란 등	네덜란드는
저작권법	미국, 영국, 아일랜드, 호주, 멕시코 등	자발적 납본
도서관법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일본, 중국,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제도를 운영
행정명령	칠레, 쿠바, 필리핀, 레바논, 리투아니아 등	

출처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7 〈표 2〉 재구성

부과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가의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간출판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납본의무를 규정한 정기간행물법 제10조 제1항, 납본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동 조 제2항 및 납본 의무위반시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한 동 법 제24 조의 규정이⁶⁾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조항 등을 침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① 동 납본제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⁷⁾이 아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② (납본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③ (정기간행물법이) 도서관진흥법과 국회도서관법 외에 따로 납본제도를 두었다고 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④ 제24조의 규정은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과태료의 부과가 부당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한국. 헌법재판소 1992, 4: 362 377).

2.3.2 납본제도의 규제성 문제

납본제도가 비록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을지

라도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적정한가가 논의될 수 있다. 규제 또는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한국.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제5529호).

납본제도는 출판사 등에게 일정한 자료의 납본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일종 규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납본제도는 개인이 부담하는 의무에 비해 그 공익적 효과가 대체로 수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문화의 보존과 이용이라는 제도의 역사성과 공공성에 따라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본제도가 과거 검열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국가공공자원의 보존과 공유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되었으며, 납본에 따른 보상금을 교부하는 점, 출판 후의 여유자료를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본제도의 규제적 성격은 크지 않다고 하겠다. 다만, 납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수단을 최적화하여 실효성 있게 설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납본)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4.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않은 자 7) “검열”이라 함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검열의 대상”은 출판물·영화·음반·비디오 등 객체화된 표현물이다 (권영성 2004).

2.3.3 납본제도와 저작권 문제

납본제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사항은 납본된 자료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이다. 특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디지털 자료의 납본 또는 납본자료의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원활한 납본제도 운영을 위한 정보처리 및 이용자의 접근권 보장과 출판사 등의 저작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다.

납본제도를 중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납본의무자들의 저항과 불신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저작권 보호를 중시하여 납본 제도 운영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경우에는 납본제도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양 자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건대, 디지털 자료의 납본과 납본자료의 디지털화의 허용 확대 등을 통해 납본제도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디지털 자료에 대한 무제한적 무료접근, 무단복제 및 불법전송을 차단하는 제도적·기술적 보호조치⁸⁾를 강구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납본자료의 이용유료화를 통한 보상 시스템의 확대, 저작권등록 및 집중관리제도와의 연계운영 등 상호이익이 조화되는 종합적 대안을 모

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4 국가정보기관과 납본제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은 사회의 구성원과 관련조직들이 지식정보의 공동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부문은 체계적인 지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획적인 지식관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OECD는 지식기반경제보고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지식정보의 확산과 지식정보기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김상배 외 2001).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기술혁신의 핵심요체인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 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가과학기술 정보활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공공성 및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국가차원의 공공정보기관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⁹⁾ 동 기관으로 하여금 국내외의 핵심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제공하도록 임무와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우

8)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데이터베이스(DB) 등 디지털 저작권의 침해를 예방 또는 금지하고자 고안된 기술, 장치 또는 무품"을 말하며, 그 유형에는 임호화기법, 접근제어, 디지털 워터마크 등이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로는, 음악 CD의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DVD 소프트웨어의 CGMS(Copy Generation Management System) 등이 있다(高橋和之 외 1999).

9) 대표적인 국가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서는 미국의 기술정보 서비스국(NTIS), 일본의 과학기술진흥센터(JST), 캐나다의 과학기술정보센타(CISTI), 중국의 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 대만의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등을 들 수 있다.

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정보기관 역할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동 기관을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종합관리·유통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국내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관리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¹⁰⁾

그런데 이들 정보기관이 국가과학기술 정보 유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 정보자원을 집중수집·관리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국가의 고귀한 자식자산으로서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동향을 정확히 파악·분석하고, 국가차원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기술혁신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정보자원이 국가정보기관

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납본제도의 운영은 그 수단적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각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정보기관이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본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납본제도는 그 가치중립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제도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허전, 김수갑 2002). 이하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보 납본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1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변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 특히,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보유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납본제도는 1969년 5월에 제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에서 처음 규정되

10)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충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계 구축 등) ⑤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지원할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4.12.3)

1. 국내·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종합적인 수집 및 분석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연계 및 공동활용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 유통체계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4.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5.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사책 및 계획의 수립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었다. 즉, 동 법 제8조에서¹¹⁾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에 관한 보고서·연구논문·기타 정기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동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¹²⁾에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의 납본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발생되는 중요 과학기술 정보자료들이 국가정보기관으로 집중 관리 및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동 납본규정은 당해기관의 통합·분화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강제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변경되어 납본제도로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즉,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산업연구원(1981년)', '산업기술정보원(1991년)'으로 재편되면서 그 근거법인 '산업연구원법'¹³⁾과 '산업기술정보원법'¹⁴⁾에서는 기존의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적 문언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고적 문언으로 대체되었다. 그나

마 동 규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에 관한 근거법률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999.1.29 제정, 법률 제5733호)로 통합 대체되면서 폐지되었다.

한편, 국가정보기관 육성법이 아닌 일반 과학기술법령 또는 지시에 의하여 납본제도가 마련된 것은 1995년에 들어와서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가 직접적 근거규정 미흡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국무총리지시' (1995. 18호, 1995.11.9)를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2부를 '협동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당시의 국가정보기관인 산업기술정보원 및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는 2001년 1월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을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1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국공립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서·보고서·연구논문 기타 정기간행물을(이하 "과학기술서적"이라 한다)을 발간한 때에는 그 2부를 기술정보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정보센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장된 과학기술정보자료를 우선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를 위한 대여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과학기술서적을 발간한 자는 그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정보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동 기관은 당시 유네스코의 권유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및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1966) 사업의 효율적 지원이라는 국가적 요구가 부합되어, 1962년 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산하조직(한국과학문화센터)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64년 2월 문교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어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1967년에는 과학기술처의 발족과 함께 소관부처가 과학기술처로 변경(재단법인)되었다. 다음 해인 1968년 8월 박정희 대통령의 KORSTIC 육성·강화 지시에 따라, 1969년 5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1969.5.19 제정, 법률 제2109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마침내 국가과학기술정보의 중심기관으로서 국내외 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급하는 국가정보활동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하였다(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 1972).

13) 산업연구원법

연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4) 산업기술정보원법

기정원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

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령’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 시행령 제40조 제3항).

요약하면,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는 60년대 후반 처음 도입되어 90년대 초까지 정보기관육성법을 통해 운영되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기술 관계법령으로 전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납본제도의 규정형식에 있어서는 초기의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다시 강제조항과 임의조항이 병행되는 방식으로 변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3.2 과학기술정보 관련 납본제도 현황

현재 국가법령 중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대략 10여개에 달한다.¹⁵⁾ 이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유통과 관련된 납본제도 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직접 규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중심으로 그 성격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2.1 과학기술 관계법령상의 납본제도

1)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제40조에서 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⁶⁾

그러나 납본(제출협조)의 부수, 기한, 자료의 내용, 납본처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 규정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관리에 관한 공통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 제14조의 2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기관은 사업의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3부) 또는 그 전자문서(1부)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정부기록보존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에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 이와 함께 동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

1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판 및 인쇄진흥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영화진흥법, 청소년보호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교육학술정보원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원사무규칙 등이다.

16)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과학기술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계 구축 등)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1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연구개발결과의 공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배포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배포처·부수 등은 하위시행규칙에서 규정).

록 하고 있다(동 규정 제20조 제1항).

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이 법은 대학·기업·연구소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7조 및 동 법시행령 제6조를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로 하여금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사용방법·사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조장·지원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2 도서관 관계법령상의 납본제도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이 법에 의한 납본제도는 국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국가문화유산으로서의 도서자료의 종합적인 수집·보존 및 활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동 법 제17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 등을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 외의 자의 납본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납본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3항 및 동 법 제53조 제3항).

2) 국회도서관법

이 법에서 정하는 납본제도는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동 법 제7조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및 교육·연구기관이 도서·연속간행물·멀티미디어 자료,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상기 외의 자는 2부를 각각 '국회도서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납본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동 조 제2항),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2.3 간행물 관계법령상의 납본제도

18)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7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기업에서 기밀보호를 요청하는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그 결과 등에 대한 다른 기관과의 공동이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정보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또는 연구소는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정보의 목록·사용방법·사용절차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조장·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1호를 통해 공동이용 조장·지원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지정).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한 납본제도는 신문·잡지 등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것이다. 동 법 제10조는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간행물(등록 후 처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신문·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2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1항). 납본자료에 대하여는 그 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하며(동 조 제2항), 납본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동 법 제24조 제1항).

2)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특별법에 의한 법인·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기록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법 제16조에서 공공기관이 간행물을 발행하면 지체 없이 그 3부를 '관할자료관' 및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조 제2항). 그러나 송부기록물에 대한 보상이나,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3.3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실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중요

정보자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공공자금이 직접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는 물론이고, 국가기관이나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책자료, 학술잡지, 기술분석자료 등 일반 과학기술정보들이 망라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납본제도 자체의 완전성을 위해서는 납본대상과 범위, 납본주체와 납본처, 납본절차와 방법, 납본부수, 납본기한, 납본에 따른 비용보상과 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구성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과학기술정보와 관련된 납본제도는 다양하게 분산되어 규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도운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납본과 관련한 해당 주체들의 인식과 실천의지의 부족 문제도 있으나, 납본제도 자체가 가지는 '제도의 완전성'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즉, 대개의 경우 규정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법적근거로서의 규범력이 미흡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제도 규정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다.

3.3.1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문제점

1) 납본제도로서의 규범력(법적근거) 미흡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상 일종의 법적의무의 부과에 해당하므로, '법률'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 특히 과학기술관계 법령상의 납본제도는 그 법

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입법(대통령령 또는 부령)의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적의무로서의 구속력이 부족하며,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도 미흡하여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협력에 기대하는 수준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납부제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에 불과하고, 또한 과학기술정보 납부제도의 본래 취지인 '국가정보기관으로의 계속적 납부' 이 아닌 '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일시적 자료제출'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범력 부족은 납부주체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발행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납부제도로서의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2) 제도의 적용범위와 내용 등 완전성 부족
과학기술정보 납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와 내용 등 제도로서의 완전성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현행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대부분이 정보나 자료를 제출한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납부주체·납부시기·납부부수·납부처·납부에 따른 보상 및

제재 등 납부제도로서의 구비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어느 정도 납부제도로서의 실질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함으로써 일반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납부근거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동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기본연구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¹⁹⁾ 납부 대상범위가 크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협동연구개발촉진법'의 경우, 연구개발정보의 산·학·연 간 공동이용에 필요한 '목록·사용방법·사용절차 및 사용료' 등의 안내 정보에 대한 제출을 규정할 뿐 '정보자료 자체'에 대한 납부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납부제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규정내용은 국가정보활동 수행에 필요한 중요 정보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유효한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한다.

3) 일반 납부제도의 적용가능성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와 관련된 납부제도로서 과학기술 관계법령 외에도 도서관 관계법이나 간행물 관계법에서 규정하

1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는 납본제도가 있다. 이들 납본제도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자료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납본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납본제도들은 그 목적성이나 실제 운영상의 차이 등으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로서 적절히 기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회도서관법’에 의한 납본제도는 공공적 정보관리 및 이용촉진이라기보다는 ‘국회의 입법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가정책수행을 위한 적극적 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납본제도는 각급 도서관의 육성과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는 있으나, 정보자료의 관리와 유통을 분야별 관리가 아닌 자료형태별로 관리하는 등 운영 시스템이 상이하여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위한 납본제도로 직접 활용하거나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본제도의 경우도, 비록 과학기술 분야의 잡지나 기록물 등이 포함되지만, 그 목적·납본의 계속성과 포괄성·납본자료의 운영 등에 있어서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집중관리·보존 및 이용이라는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로서 활용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결국 일반법령에 의한 납본제도는 현재와 같은 운영 시스템 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납본제도 일반의 문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포함한 현행 국가 납본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도 제기된다. 즉, 현재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본제도는 인쇄형 매체의 납본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자출판물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한 수용성과 적용성이 미흡하고, 납본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유통에 따르는 저작권 보호 등 납본 이후의 보존·관리체계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고, 국가납본제도의 전체적인 조정과 운영체계가 확립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3.3.2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운영실태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운영은 국가과학기술정보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기관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동안의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체기관으로 지정되어 역할을 수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유통의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관이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또는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는 주요 정보자료의 현황을 중심으로 현행 납본제도의 실제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는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조사대상과 범위

제도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는 주요 공공과학 기술정보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가 국가연구개발 사업보고서 등 공공연구기관의 정보자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행 납본제도 하에서는 민간분야에서 발생되는 과학기술정보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과학기술정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국공립연구 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학회, 협회 등 공공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공공재적 성격의 정보자료를 말한다.

공공과학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20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종 연구보고서, 과학기술 분야의 664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잡지, 과학기술 분야 170개 협회에서 발간하는 협회지, 그리고 이공계 학과를 설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694개 대학부

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²⁰⁾

2)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재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수집하여 관리·유통시키고 있는 주요 공공정보자료는 전체대상의 약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정보유형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연구개발보고서의 경우 전체 수집대상 총 2만5,794건 가운데 2,289건이 수집되어 9%를 확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 학회의 학술지는 전체 2,236종 가운데 569종으로 25%가 수집되고, 협회지는 177종 중 156종을 수집하여 88%, 대학부설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총 1,197종 가운데 250종이 수집되어 21%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집실적에는 동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거나 상호교환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자료 까지 포함된 것임을 감안할 때, 순수 납본율 통

〈표 2〉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 운영실태

구 분	적용기관(정보)	수집대상(발생량)	수집(납본)량	수집비율
국가연구보고서	20개 정부부처	2만 5,794건('03)	2,289건('03)	9%
과학기술학술지	664개 학회	2,236종	569종	25%
과학기술협회지	170개 협회	177종	156종	88%
대학정기간행물	694개 대학연구소	1,197종	250종	21%

출처 : 강무영 외. 2004.『국가 고유 정보자원 생산 및 활용실태 백서』 및 KISTI 내부자료.

20) 조사대상인 과학기술 분야의 학회, 협회, 이공계 대학부설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현황 및 해당 기관들이 생산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 논문집 등 정보자료현황 등의 기초통계는 『국가 고유 정보자원 생산 및 활용 실태 백서』(강무영 외 2004)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해 수집되는 자료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 된다.

3) 시사점 및 대책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앞서 검토한 바대로 현재의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가 불완전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법률로 엄격하게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수집자료 중 납본에 의한 비중이 70% 이상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²¹⁾

또한, 납본제도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이 그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의 효과적인 운영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중요 정보자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개별기관들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구입하게 됨에 따른 국가 예산낭비는 물론, 매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수행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들이 공공의 지식자산으로서 종합관리·보존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납본제도의 실효성과 그 성공

여부는 납본자의 자발적 참여의식이나 관계기관의 운영 시스템 등 제도 외적인 요인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 그것은 납본제도 자체의 완전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4.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개선 방안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는 그 규범내용이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납본제도가 국가과학기술 정보활동에 필요한 중요 정보자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자체의 규범력과 완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납본제도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납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4.1 납본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우선 현행 납본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는 법률적 수준에서, 납본제도의 구성요소들을 구비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납본

21)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자료 중 납본제도에 의한 자료수집 비중은 2005년 4월 현재 전체 소장자료 538만 7,239책 중 380만784책으로 70.1%를 차지하고 있다(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3).

제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제화의 방안으로는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관계법에서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일반 납본제도에 관한 법률규정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4.1.1 과학기술법령에서 새로 규정하는 방안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법제화하는 경우, 그 목적과 기능상 과학기술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은 납본제도 운영이 과학기술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가 의회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일반 납본제도와는 별도로 과학기술관계법에서 국가정보유통을 위한 납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기술우위법’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약 200여 개의 연방정부 및 그 산하기관은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등 연구결과를 일반 공개 후 15일 이내에 국가기술정보기관인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NTIS는 이를 국가 차원에서 영구보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U.S.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1 Public Law 102-245;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5, Chapter 23), in effect as of January 7, 2003).

납본제도를 과학기술 관계법에서 법제화한다면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과학기술 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에 관한 최상위의 근거 조항인 동법 제26조에 ‘국회도서관법’이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의 납본제도와 같은 규정을 새로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과학기술 정보자료들이 국가정보기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하는 것이다.

4.1.2 기존 일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국가 납본제도의 난립방지와 납본주체들의 혼란 방지 및 심리적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의 납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대표적인 국가납본제도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상의 납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즉, 동 규정에서 정한 납본처에 ‘국립중앙도서관’ 외에 ‘국가과학기술정보기관’을 병기하여 양 기관으로 나누어 납본하게 하거나, 현재 지정된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자료의 부수를 확대하여 그 추가분을 국가정보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영국이나, 핀란드 등에서 납본처를 단일기관으로 하지 않고, 복수의 도서관이나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납본하도록 규정하는 방식과 같은 것이다. 이 경우 특수분야의 전문기관을 국가도서관과 병행하여 지정·운영하는 것은 동 기관이 그 분야의 납본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거나, 그 분야의 자료들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선명순 2003).

4.1.3 종합검토 및 소결

과학기술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방안은 또 하나의 납본제도가 추가됨에 따른 이용자 혼란 및 납본제도의 난립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국가과학기술정책과 연계된 정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민간 사업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공 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납본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납본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은 납본제도의 난립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납본부수 등 내용상으로는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납본된 자료를 다시 이관함에 따른 행정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 정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생각건대,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법제화는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특성과 현재 과학기술 관계법령에서 납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관련법령상의 납본규정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에 통합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2 납본제도 적용범위와 규정내용의 적정화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과학기술 관계법에서 규정할 경우에, 그 적용범위와 규정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과학기술정

보 납본제도와 관련하여 특히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납본대상과 범위를 공공연구기관의 발행 자료로 한정할 것인가 민간사업자의 출판물까지 확대할 것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출판물 등 납본자료의 유형과 범위를 어디 까지로 할 것인가, 납본주체와 방법 등 세부절차는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1 납본제도의 적용범위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과학기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대학·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반적인 납본제도는 국가 및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사업자’의 도서 등 출판물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납본제도를 공공부문으로 한정하면 그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부문 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국가과학기술 정보자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각건대, 과학기술정보는 그 특성상 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공공기관에서 발생되는 자료들은 대체로 비매문헌이나 회색문헌으로서 연구개발 활동에서의 정보 가치가 매우 큰 반면,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민간부문에서 출판되어 유통되는 발간물의 경우 정보가치가 낮고, 일반 납본제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국가적인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적용범위는 우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이들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는 대학,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납본자료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정보유통에 따르는 저작권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그 적용범위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적용범위를 ‘공공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정보’로 한정하게 되면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가 일반 납본제도와는 다른 일종의 특별규정으로서 성격을 가지게 되며, 과학기술관계법에서 별도의 제도로 규정하는 것도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4.2.2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

납본제도의 적용범위를 공공연구기관 등의 발행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에도 납본자료의 대상과 유형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납본제도의 운영에서는 자료의 망라성과 포괄성이 중시되지만, 자칫 납본자료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납본자와 납본처 모두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본자료의 유형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로서는 국내외 수집정보, 학술지, 논문,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련 과제 및 성과정보, 기술·산업정보, 연구개발 인력 및 기자재, 기술이전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그러나 정보매체의 형태나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납본의 대상이 되는 자료의 유형으로서는 상기 정보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행본류(일반도서, 참고도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정책자료, 분석자료, 조사자료, 통계자료 등)와 연속간행물(잡지, 연감, 연보, 공보, 논문집, 세미나집, 학술회의자료 등) 및 이에 준하는 정보자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매체 특히, 전자출판물²²⁾과 관련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가 존재하고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아직은 부족한 실

22)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생산·출판·배포·관리·축적·이용되는 모든 출판물’을 의미하며, 그 유형에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리적 형태의 매체에 고정된 오프라인 전자출판물(CD-ROM, 컴퓨터 디스크, DVD 등 패키지형 매체)과, 인터넷·PC통신 등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되고 유통·이용되는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온라인 전자출판물(DB, 웹 정보 등 네트워크형 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온라인 전자출판물의 납본과 관련한 논의들이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자출판물 가운데 특히 온라인 전자출판물에 대한 납본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노르웨이·덴마크·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다(선명순 2003).

따라서,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상기의 자료유형들이 전자매체, 즉 CD ROM이나 컴퓨터 디스크 등으로 발행된 경우에, 즉 현재의 납본제도 하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기 자료들을 납본 후 축적·관리하는 과정에서의 DB구축 등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인쇄 자료와 함께 전자문서가 동시에 납본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연구기관들이 연구성과정보를 국가정보기관에 제출할 때는 해당 전자문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5 U.S.C. 1180.4.(a) 및 1180.8.(a) 등).

4.2.3 납본주체·시기·방법 등

1) 납본주체와 납본처

납본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도 실제 제도 운영과정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 납본제도와 같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와 같은 표현은 그것이 개인을 의미하는지 추상적인

'기관'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여 납본회피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납본에 대한 책임의 명확화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납본의 주체는 '해당 공공연구기관 등의 장'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공연구기관 등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경우 대체로 '단체저작물'로 인정되어 그 저작권 및 판권 등 처분권한이 기관에 귀속되고 있다는 법적 현실도 고려한 방안이다.

납본처의 경우에는 가능한 단일창구로 하되,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목적상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정보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보고서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납본처를 복수로 지정하여 관련 정보의 분산보관 및 이용촉진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2) 납본부수 및 납본기한

납본부수는 납본자료의 보존 및 관리·이용의 측면과, 납본자의 부담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은 보존용과 관리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2부를 납본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²³⁾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납본자료의 관리·보존 및 이용촉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 1부를 추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국가연구개발보고

23) 현재 납본부수에 관하여 국회도서관법은 공공기관은 10부, 기타의 자는 2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각각 2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연구보고서 3부와 전자문서 1부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최소 1부에서부터 최대 30부에 이르는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서의 경우에 전자문서의 제출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납본기한은 일반 납본제도의 경우 보통 특정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의 경우 그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므로, 발송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연방연구기관의 연구성과정보제공시한을 일반 공개 후 15일 이내로 하고 있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납본절차와 방법

일반적으로 납본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전에 납본명세서를 제출하여 납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적인 납본제도 하에서의 납본방법은 우편을 통한 납본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전자출판물이 일반화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등 일부자료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전자문서를 납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가 있다. 따라서 납본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아울러 규정할 필요가 있다.

4.3 납본제도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의 강구

아무리 납본제도를 법제화한다고 하더라도 납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납본제도의 실질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납본에 따른 보상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등 이행확보수단을 적절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3.1 납본에 따른 보상제도 확대

일반 납본제도 하에서 납본은 무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의 일정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 특히 공공연구기관 등의 발행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납본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건대, 해당 출판물의 발행에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의 예에 준하여 납본에 따른 비용의 전보차원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비매자료는 제외하고 일반서점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납본제도에서와 같은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⁴⁾

24) 납본에 따른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도서정가의 50%를 보상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일반도서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40~50%, 마이크로 자료에 대해서는 50~60%를 보상하고, 독일의 경우 150 DM 이상 혹은 50%를 보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또한 보상의 방법은 납본의 주체가 '기관'임을 감안하여 반드시 금전보상에 한하지 말고 기술적·정책적·간접적 보상수단을 폭넓게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기관을 통하여 학회 등 납본기관에 대해 납본에 따른 보상으로서 학회운영에 필요자금이나 정보화 등 사업을 지원하는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3.2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유인

일반적으로 납본제도를 실질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납본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정기간행물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도서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²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연구보고서의 배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공공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할 경우, 기관의 성격상 금전적 제재조치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납본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는 비금전적인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비금전적인 제재조치로서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의 현행 제재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납본제도와 과학기술정책수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시에 납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제도화한다든가, 학회·협회 등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육성자금 지원시 납본제도의 이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납본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기관의 경우에도 납본주체들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자연스럽게 납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납본자료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저작권 등의 문제도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4.4 납본자료 관리 및 이용제도의 규정화

현행 납본제도들은 납본자료가 납본주체로부터 납본처로 제출되는 과정까지 만을 그 규율범위로 하고, 납본 이후의 납본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이용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

25)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바, 미국은 2,500 달러, 캐나다는 출판사 2만 5,000·개인 2,000 달러, 프랑스는 50만 프랑, 일본은 소매가의 5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출판물 납본 및 납본자료의 디지털화·온라인 유통에 따르는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 적절한 규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납본제도의 규율 범위를 확장하여 납본자료의 관리 및 이용제도에 관한 사항도 적절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납본자료를 디지털화할 경우에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하고, 납본자료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보존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는 영구저장실에 수용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마이크로 필름·디스켓 등으로 제작·배포함은 물론, 온라인 전문검색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여 서비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⁵ U.S.C. 1180.10, 및 1180.11(d) 등).

또한, 디지털 자료의 온라인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적 성격의 자료에 대하여는 그 저작권을 허용하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가연구개발보고서의 경우 저작권이 원칙적으로 주관연구기관에 귀속되므로,²⁶ 납본자료의 정보유통과 관련한 저작권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납본을 받은 국가정보기관이 납본자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디지털화

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결 론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관계법령상의 납본제도들은 그 자체가 불완전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납본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는 첫째, 행정입법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납본규정을 법률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납본제도가 일종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법률주의에 적합하도록 하는 데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정책에 관한 최상위의 근거법률인 ‘과학기술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과학기술정보 납본제도를 일반 납본제도와 구분하여 별도로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용

²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② 자적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범위와 규정내용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납본제도의 적용범위를 ‘공공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정보’로 하여 일반 납본제도와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과학기술 정보 납본제도는 일반 납본제도와의 관계에서 특별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와 함께 납본주체, 납본부수와 기한, 납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현행의 일반 납본 제도를 준용하여 규정하되, 과학기술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납본시기 등 규정내용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납본제도의 이행확보를 위한 정책수 단을 현실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본제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납본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인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납본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일반적인 금전보상 외에도 기술적·정책적인 보상수단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비금전적인 제재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을 비롯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보고절차, 공공기관·단체 등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정책 등과 연계하는 제재 및 유인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납본제도의 규율범위를 확대하여 납본 이후의 납본자료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까지도 적절히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납본제도 운영기관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기술적 보호조치라든가, 자료보존 및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의무 등을 규정

하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보고서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자료의 경우 디지털화 및 온라인 유통에 따르는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허락 의제규정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무영, 이정구, 김용렬, 최선희, 박재원, 김병규, 강순종. 2004.『국가 고유 정보자원 생산 및 활용 실태 백서』.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高橋和之, 松井茂記. 1999.『インターネットと法』. 東京: 有斐閣.
- 권영성. 2004.『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상배, 김도승, 원동규, 최경진. 2001.『지식정보유통의 촉진 및 권리보호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윤명. 1999.『디지털 컨텐츠의 법적 확보』.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서혜란. 2003. 디지털 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 선명순. 2003.『한국의 온라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 신인용. 2002.『국가문헌자료 수집을 위한 납본제도에 관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윤종민, 정용일, 이성호, 이형진. 2002. 국가연구개발보고서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제7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 워크샵 학술발표 논문집』, 21~43.
- 윤종민. 2003.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147~165.
- 윤희윤. 2002. 국내외 전자출판물 납본제도의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185~207.
- 윤희윤. 2003.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수집규모의 최적화 연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대상으로』.『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2): 1~23.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3~52.
- 이두영. 1986. 한국납본제도의 발달과정과 현상.『국회도서관보』, 제185호.
- 이윤석, 이형진, 윤종민. 2003. 미국의 공공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정책 연구.『제8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 워크샵 학술발표 논문집』, 332~353.
- 이진상. 1994. 우리나라 납본제도의 개선방향.『국회도서관보』, 31(1).
- 정동렬. 200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지식정보인프라 통합정보망 구축 방향에 대한 고찰.『정보관리연구』, 35(3): 1~28.
- 정철호. 2001.『우리나라 저작권등록제도와 납본의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
- 조재순. 2000.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어서의 전자출판물의 납본제도 개선방안.『한국도서관협회 세미나 발표자료』.
- 津田良成 編. 1994.『圖書館・情報學概論』. 第2版. 東京: 劲草書房.
- 한국.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991.1.29 제정, 법률 제5709호.
- 한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1.29 일부개정, 법률 제7127호.
- 한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04.12.3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595호.
- 한국. 과학기술기본법, 2004.9.23 일부개정, 법률 제7218호.
- 한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05.3.8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731호.
- 한국. 국회도서관법, 2002.12.30 일부개정, 법률 제6836호.
- 한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003.5.29 일부개정, 법률 제6906호.
- 한국.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2004.3.17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8312호.
- 한국.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2005.1.27 일부개정, 법률 제7351호.
- 한국. 산업기술정보원법, 1991.1.14 제정, 법률 제4320호.

- 한국. 산업연구원법, 1981.12. 31 제정, 법률 제 3538호.
- 한국.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03.5.29 일부개정, 법률 제6905호.
- 한국. 출판 및 인쇄진흥법, 2005.3.24 일부개정, 법률 제7421호.
- 한국.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 1969.5.19 제정, 법률 제2109호.
- 한국.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2001.1.29 일부개정, 법률 제6400호.
- 한국. 행정규제기본법, 1998.2.28 일부개정, 법률 제5529호.
- 한국. 현법재판소, 1992.『현판집』, 4: 362 377, 1992.6.26. [90 현바 26]
- 한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2004.9.23 일부개정, 법률 제7219호.
- 한국.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2001.1.14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0104호.
-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972.『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10년사』. 서울: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 한국도서관협회. 1996.『문현정보학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허전, 김수갑. 2002.『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관련 법·제도 연구』. 대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OECD. 1996. *The Knowledge based Economy*. OECD/GD(96)102.
- OECD. 1997. *National Innovation Systems*. OECD.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3. 국립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인용 2005. 4. 28].
⟨<http://www.nl.go.kr/>⟩.
- U.S. American Technology Preeminence Act of 1991, Public Law 102-245.
-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Title 15, Chapter 23), in effect as of January 7, 2003.